

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210
----------	------

2022년 6월 21일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: 2022. 5.25.

2.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
3. 회부일자 : 2022. 5.27.

4. 상정일자 :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
○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6. 17.)

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
- **원안가결**

Ⅱ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조정실장 김의승)

□ 기획조정실장 김의승입니다.

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11건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, 의안번호 제3210호

「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안건은

○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상 지출계획의

‘재무활동’ 금액이 당초보다 20%를 초과하여 변경되어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따라,

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○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,

수입계획 중 ‘예치금 회수’ 금액이

당초 55억 3천 4백만 원에서 272억 6백만 원으로

216억 7천 2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.

○ 이에 따라, 지출계획 중 ‘재무활동’ 금액이

당초 35억 5천만 원에서 247억 2천 2백만 원으로

211억 7천 2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.

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엄지운)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3210호, **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2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(1) 제안이유

사회투자기금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기금의 2022년 수입 및 지출 계획이 변경되어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 11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(2) 주요내용

가.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, '22년도 수입계획 상 「예치금 회수」 금액이 당초 5,534백만원에서 27,206백만원으로 21,672백만원 증가하였고,

나. 이에 따라 지출계획 상 재무활동 「예치금」 금액이 당초 3,550백만원에서 24,722백만원으로 21,172백만원 증가하였음.

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〈수입 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당 초 (A)	1차 변경 (B)	2차 변경 (C)	증 감 (A-C)
계	16,610	16,610	38,282	21,672
융자금회수	10,915	10,915	10,915	-
이 자 수 입	61	61	61	-
기 타 수 입	100	100	100	-
예치금회수	5,534	5,534	27,206	21,672

〈지출 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당 초 (A)	1차 변경 (B)	2차 변경 (C)	증 감 (A-C)
계	16,610	16,610	38,282	21,672
융자성사업비	12,000	12,000	12,000	-
비용자성사업비	1,040	1,540	1,540	500*
기 본 경 비	20	20	20	-
예 치 금	3,550	3,050	24,722	21,172

*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('22.3.3.)을 통해 임팩트투자조합 출자금 편성으로 비용자사업비 既 증액

- 수입계획 : 16,610백만원 → 38,282백만원(21,672백만원)
 - 예치금 회수 : 5,534백만원 → 27,206백만원 (증 21,672백만원)
- 지출계획 : 16,610백만원 → 38,282백만원(21,672백만원)
 - 비용자사업비 : 1,050백만원 → 1,550백만원 (증 500백만원) ※ 1차 변경 내역('22.3.3.)
 - 예 치 금 : 3,550백만원 → 24,722백만원 (증 21,172백만원)

3. 검토내용

- 관련 법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
 - 관련 기준에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(수입계획)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치금(지출계획)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%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

- 동 기금은 「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2022년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 동의안」이 의결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「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회」를 개최하고, 수입계획의 변동없이 지출계획의 정책사업을 증·감 조정한 바,
 -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재무활동(사회투자기금)**은 당초 지출계획(35억 5,000만원)보다 △14.1%, △5억원을 감액하고, 다른 정책사업인 **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(사회투자기금)**은 당초 지출계획(130억 4,000만원)보다 3.8%, 5억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였으나 정책사업비의 20% 미만을 변경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같음한 것으로 확인됨

- 제출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'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 216억 7,200만원을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(216억 7,200만원)에 반영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여유자금 예치(211억 7,200만원) 등에 반영하려는 것으로
 - **재무활동(사회투자기금)**의 경우에는 당초 지출계획(35억 5,000만원)보다 596.4%, 211억 7,2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

-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'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사회투자기금의 조성액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으로
 - 동 기금의 관련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, 필요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- 다만, 관련 법령은 “정책사업”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,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동 기금은 운용계획 변경안을 “비용자성사업, 융자성사업, 기본경비, 예치금”으로 기재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인 **①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, ②재무활동, ③행정운영경비**로 기재하지 않고 있는 바,
 - 지난 '22년 4월에도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처럼 의회에 제출된 다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정책사업명을 임의로 기재한 사례가 지적된 바,
 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에도 정책사업명을 편의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은 의회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〈표 3-1〉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사업/단위사업/세부사업/편성목	당 초 (A)	1차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2차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C)	증 감 (D=C-A)	증 감 륜 (E=D/A)
지출합계	16,610	16,610	38,282	21,672	130.5
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(사회투자기금)	13,040	13,540	13,540	500	3.8
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 (사회투자기금)(사회투자기금)	12,710	13,210	13,210	500	3.9
사회적금융기관 지원	710	710	710	-	-
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	12,000	12,500	12,500	500	4.2
민간융자금	12,000	12,000	12,000	-	-
출자금	-	500	500	500	-
사회투자기금 운용 및 관리 (사회투자기금)	330	330	330	-	-
채권 및 기타관리비	330	330	330	-	-
재무활동(사회투자기금)	3,550	3,050	24,722	21,172	596.4
보전지출(사회투자기금)	3,550	3,050	24,722	21,172	596.4
여유자금예치	3,550	3,050	24,722	21,172	596.4
행정운영경비 (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)	20	20	20	-	-

※ 자료근거 : ①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사회투자기금 지출계획, ②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('22. 5.25) 재구성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생략」

VI. 부대의결 : 「생략」

VI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(2021. 6. 17.)

2022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321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5월 25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사회투자기금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기금의 2022년 수입 및 지출 계획이 변경되어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 11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, '22년도 수입계획 상 「예치금 회수」 금액이 당초 5,534백만원에서 27,206백만원으로 21,672백만원 증가하였고,

나. 이에 따라 지출계획 상 재무활동 「예치금」 금액이 당초 3,550백만원에서 24,722백만원으로 21,172백만원 증가하였음.

다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〈수입 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 (A)	1차 변경 (B)	2차 변경 (C)	증감 (A-C)
계	16,610	16,610	38,282	21,672
융자금회수	10,915	10,915	10,915	-
이자수입	61	61	61	-
기타수입	100	100	100	-
예치금회수	5,534	5,534	27,206	21,672

〈지출 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 (A)	1차 변경 (B)	2차 변경 (C)	증감 (A-C)
계	16,610	16,610	38,282	21,672
융자성사업비	12,000	12,000	12,000	-
비용자성사업비	1,040	1,540	1,540	500*
기본경비	20	20	20	-
예치금	3,550	3,050	24,722	21,172

*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('22.3.3.)을 통해 임팩트투자조합 출자금 편성으로 비용자사업비 既 증액

- 수입계획 : 16,610백만원 → 38,282백만원(21,672백만원)
 - 예치금 회수 : 5,534백만원 → 27,206백만원 (증 21,672백만원)
- 지출계획 : 16,610백만원 → 38,282백만원(21,672백만원)
 - 비용자사업비 : 1,050백만원 → 1,550백만원 (증 500백만원) ※ 1차 변경 내역(22.3.3.)
 - 예치금 : 3,550백만원 → 24,722백만원(증 21,172백만원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기금운용계획 변경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정책팀 김나영 (☎ 2133-5477)